

접수번호

[D-1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[D-2] 예비인증 신청자 의무사항

[D-3] 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 법인 선임서 (선택)

[D-4] 사업자 증빙서류

[D-5] 사전필수교육 수료증

D. 필수 제출서류

서울도시주택공사
공동체주택사업부

예비인증 신청자 의무사항 동의서

1. 용자 취급 금융기관(이하 “협약은행”이라 한다.)의 용자 승인이 결정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용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협약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2. 동일 사업으로 중복하여 용자추천을 받을 수 없으며, 용자대상자 추천 후 금융기관 대출 미 이행 시 향후 용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다.
3. 사업공사 계약 후 공사 도급계약을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며, 서울시 및 협약은행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4. 건설 완료된 주택의 **등기일로부터 6개월~7개월 기간 중에 본인증 심사를 신청**하여야 한다. **본인증 심사는 준공 완료된 주택을 현장 점검하여 예비인증 지표 준수여부를 실질 심사하며, 본인증 탈락 등 사유로 인증 취소 시에는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, 대출금 조기 회수하고, 향후 공동체주택 지원사업(금융지원, 커뮤니티 지원사업 등)에서 배제**된다.



- 예비인증 : 설계도, 주택관리, 프로그램 계획안 등 서면심사
- 본인증 : 건설 완료된 주택을 현장 점검하여 인증지표 준수 여부 실질 심사
- 모니터링 : 공동체주택 운영 점검

7.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.

- ① 본인증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
-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을 받은 경우
- ③ 사업주체의 휴업·폐업·부도발생 및 사업주체 변경으로 공동체주택 건설공사가 불가능한 경우
- ④ 민관협력형, 민간임대형은 본인증시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최초 주택 임대료가 주변시세 대비 95%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⑤ 공간, 공간운영 및 공간관리 등의 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- ⑥ 기타 서울형 공동체주택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

5. 예비인증 사업자는 **대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**에 **지정된 보증사(SGI 서울보증보험)**에서 **이차보전금 보증서를 발급**받아 **서울시에 제출**하여야 한다.
6. 본인증 통과 사업자는 공동체주택 홈페이지(<http://soco.seoul.go.kr>)에 주택정보를 등록하고, 공동체공간을 공동체주택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
신청자(대표자) _____ (인)

[D-3]

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법인 선임서

주택명 :

대상지 :

주택공급유형 :

상기 예비인증제에 신청함에 있어 컨소시엄 구성 및 수행업무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오며, 본 사업에서 인증제 통과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oo 주식회사(대표이사 ooo)에게 위임합니다.

구성원	업태/업종	사업자등록번호	수행업무	비고

2021 년 월 일

ooo사 대표이사 (인)

ooo사 대표이사 (인)

ooo사 대표이사 (인)

- 주) 1.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할 경우만 작성
2. 대표 법인은 서울형 공동체주택 예비인증제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해야 함